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namkung01@korea.kr](mailto: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의 정보제공 요청 등)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업체에 관한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을 위한 방법)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수출식품등 부적합 발생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2. 외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제1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5의3. 법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의3에 따른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현지실사 대응지원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  
외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취급  
하는 상호, 주소 등 업체에 관  
한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  
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  
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  
원을 위한 방법) 법 제38조제3  
항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  
법을 말한다.

1. 수출식품등 부적합 발생에  
따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원  
인조사 및 개선 사항 등에 대  
한 안전관리 지원
2. 외국 정부에 수출업소등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  
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5. (생략)

<신설>

<신설>

16.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2. (생략)

<신설>

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5의3. 법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의3에 따른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현지실사 대응지원

16.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신 설>

3. (생 략)

4. 법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  
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  
사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3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